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51183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12.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10.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9. 10. 22. 접수 제8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존재

- 1) C은 2017. 12. 20. D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약정한 9,5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2) D 주식회사는 2022. 1. 21.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22. 3. 31.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통지는 그즈음 C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은 2023. 3. 30. 현재를 기준으로 원금 9,064,533원, 미수이자 8,182,403원, 연체이자 2,254,956원, 합계 19,501,892원에 이른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E가 2019. 10. 3. 사망하고 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으로서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3/11, 그의 자녀들인 F, C, G, H이 각 2/11의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 2) 그런데 위 법정상속인들은 2019. 10. 3.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9. 10. 22. 접수 제8694호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공동담보의 존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은 합계 89,029,320원으로 추정되고, 2019. 10. 22.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공동으로 마쳐져 있었는데,

2019. 10. 3. 기준 그 피담보채권액은 29,991,884원이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10. 3.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합계 59,037,436원(= 89,029,320원 - 29,991,884원)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I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채무가 많아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가족들이 2023. 6. 30. C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등으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은 앞서 본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실상 C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별지